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7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로7017 운영사무 이관(푸른도시국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따라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푸른도시국의 사무분장 중 서울로7017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함(안 제19조제8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9. 30.~10. 5.)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생 략)</p> <p>8. <u>서울로7017 운영 및 유지관 리에 관한 사항</u></p>	<p>제19조(푸른도시국)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사무분장 정비에 관한 것으로 추가 인건비 순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유 진(02-2133-6729)